

한-미 FTA 수출 활용시, 통관 유의 사항은¹⁾?

A

2012년 3월 본격적으로 발효된 한-미 FTA는 EU에 이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그 의의가 크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제정된 미국 고유의 통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거나 불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의 관세행정 동향과 통관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자의 성실한 입증의무를 규정하는 現미국 통관제도의 근간은 1993년 세관 현대화법이다. 미국의 최초 관세법은 1789년 제정되어 약 220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 체계를 갖춘 것은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이다. 동법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부문들을 규정한 원류이다.

그리고 1993년 세관 현대화법에 의해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 세관 현대화법은 그간의 관세법의 틀을 깬 시도로서, 세관과 무역업자에게 구법에 없었던 3대 키워드(Informed Compliance, Shared Responsibility, Reasonable Care)를 제시하였다.

먼저 통관절차 집행의 당사자로서 세관은 관세법규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되 이해관계자에게 관세행정 규정을 모두 공개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Informed compliance). 무역업자는 자율신고를 통한 신속통관을 보장받을 권리와 갖는 대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갖게 되는 등 세관과 수입자 모두에게 책임을 분배하게 되었다(Shared Responsibility). 그리고 수입자가 법규 및 그 이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순응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즉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면 규정 위반시 처벌을 완화해 주는

1) 본글은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의 2014년 해외통관제도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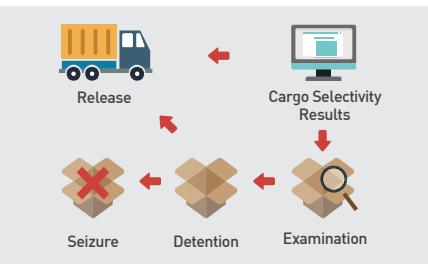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관세행정에 있어 수출입 당사자의 법준수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C-TPAT 인증은 미 세관의 검사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척경

한편 미국의 관세행정은 2001년 9.11 이후 통관제도의 최우선순위가 “안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테러

방지를 위해 생산, 선적, 운송, 보관 및 유통 등 물류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의 법규준수도를 심사 인증하는 C-TPA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TPAT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은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우선 반출 및 검사 비용 절감, 벌금 경감, 세관전담자(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를 통한 상담, CEE(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프로그램²⁾ 가입신청 자격 부여 등 총 6종류에 달한다. 미인증업체 화물은 세관검사 빈도가 높아 검사비용 추가 부담(1천불~5천불), 통관지체에 따른 납기지연 등 직·간접적인

■표1 미국의 통관절차

	주요 내용
Step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계약 체결, 구매 발주, 제조 및 운송 (수출국)
Step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사에서 항만 도착 전 적하목록 CBP 전송(e-manifest)
Step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통해 form 3461(즉시반출신고서) 전송 도착 후 15일 이내 제출 원칙, 이 때 bond 제출 필요
Step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에 걸리지 않은 물품은 즉시 반출(Release) 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화물은 X-ray 검색 실시 검사 결과 이상 없는 물품은 반출(Release), 이상 있는 물품은 통관보류(Detention) 및 압류(Seizure) 조치

2) 미 CBP가 “21st Century Trade”비전의 하나로 도입한 One-Stop 세관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품목별로 관리전담센터를 설치하여 파격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CEE는 전자, 의약, 자동차, 석유, 비금속 등 주요 품목별로 설치·운영(10개)하고 있으며 수입검사·사후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
Step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 반출 후 form 7501(Entry Summary) 전송 및 세액 납부 제출기한 : 화물반출 후 10 근무일 이내
Step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심사팀에서 납세신고 내역 심사 및 과부족 세액 정산 세액 정산(Iiquidation)은 수입일부터 314일에 마감. 단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은 10년까지 정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신속, 안전한 통관과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미국에 선적되는 화물을 출발하기 전 위험을 평가하여 해외 항구에서 고위험 화물을 미리 검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58개 항구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으로 선적되는 화물의 80% 이상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주요 물품의 통관시 유의사항

미국으로의 수출시 수입통관관리는 물품에 따라 관광하는 기관이 각기 상이하다. <표 2>와 같이 식품, 의료기기, 농축산물, 완구, 자동차 등은 수입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해져있으며, 별도의 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가 없으면, 수입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對미 수출자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2 미국의 품목별 수입통관 관리기관

수입관리기관	담당 분야
식약청(FDA)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 사료 및 수의사용품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및 검사 업무 담당
농림부 및 식품안전검사청 (USDA & APHIS)	농축산물 담당
소비자보호 안전위원회(CPSC)	완구, 유아용품, 리터, 페인트 및 자전거 등 소비자안전용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및 검사업무 수행
환경청(EPA)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허가 담당
연방통신위원회(FCC)	셀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업무 담당
수산야생동물청(FWS)	어패류,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 허가업무 담당

우선 미국은 식품에 대해 식약청(FDA) 관리 하 식품제조 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회사는 해외제조 시설을 FDA에 미리 등록하고, 수출할 때 마다 그 내용을 미 FDA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시설은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 시설이며 식당은 제외한다. 등록대상 식품은 건강보조

식품, 음료수, 과일, 야채, 수산물, 유제품, 냉동제품, 베이커리, 통조림, 캔디, 동물 사료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사전통보내용은 해당 식품의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수출업체명 등이며, 항공은 도착 4시간 전, 해상은 도착 8시간 전 보고 및 FDA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등록 시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FDA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수입 식품은 도착항에서 억류된다. 그리고 사전신고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CBP가 FDA를 대신해서 벌금 부과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3년 249건의 통관 보류건이 발생했다. 품목별로는 음료(116건), 열차(48건), 수산물(55건), 과자(25건), 인삼류(24건), 소스류(22건) 순으로 통관 보류가 발생했다. 통관불허 사유는 수산물의 경우 내장을 미제거하거나, HACCP 미인증인경우가 대다수였고, 아이스크림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땅콩분을 라벨링에 미표기한 것, 건강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라벨링에 기재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및 자전거 등 소비자안전용품은 CPSC(소비자보호안전위)가 관리하며, 수출시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판정받은 증명서 첨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대상물품은 완구, 유아용품, 섬유제품, 헬맷, 자전거, 페인트 등 47개물품이다. 해당물품은 CPSA(소비자보호안전위)가 미CBP와 독자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통관보류, 폐기·반송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항목은 납, 가소제 등 중금속 성분 기준치 이상 함유 여부로 알려졌다. 최근 미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강화된 미 소비자안전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통관 보류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안전용품 수출자는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셀폰, 블루투스, 무선통신기기, 어패류,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은 수입허가 담당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주요 물품의 통관 피해 사례와 대응방법

한-미 FTA 발효 이후 넓어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미국에 새로운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입요건과 통관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농수산물 · 식품 및 소비자제품 중심으로 위생 · 안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고, 법 집행도 매우 엄격하다. 특히 미 CBP의 C-TPAT와 선적정보 도착전 송부, 미 FDA의 식품제조사설 사전등록 및 식품선적정보 사전송부 등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대표적인 수입통관 절차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한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등록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미 FDA는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은 각종 원재료 구매 · 조달 및 제품의 제조 · 수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한다. 미 CBP, FDA 등의 사후 자료제출요구에 대비해서 5년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 보관은 우리기업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문이다.

사례 1 한국산 기능성 건강식품 – 통관불허

2012.11월, 한국에서 잘 팔리는 기능성 건강제품을 수입했으나 미 FDA에서 포장박스에 표기된 제품의 효능이 의약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통관을 불허하고 반송/폐기 처분 명령(약 15만불 피해)
 –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식품이라도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필요

사례 2 한국산 눈마사지기 / 레이저 치술 – 통관불허

2012.12월, 한국의 유망중소기업이 생산한 눈마사지기 및 레이저치술을 미국으로 수입했으나, 미 FDA에서 포장박스에 표기된 문구가 의료기기로 볼소지가 있다며 통관 불허
 – 한국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및 의료기 제조시설 등록 필요

사례 3 한국산 샴푸 – 통관불허

한국에서 제조한 샴푸를 수차례 이상 없이 미국으로 수입통관해 왔으나 미 FDA에서 모발재생 효능이 있다는 광고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통관 불허
 – 모발 치료가 있는 제품은 샴푸라도 미 FDA의 사전수입허가 필요

사례 4 한국산 홍삼드링크 – 통관불허

미량의 녹용 성분이 첨가된 한국산 홍삼 드링크를 미국으로 수입해 왔으나 녹용의 축산물 검역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미 USDA에서 통관불허
 – 식품 또는 기능성 드링크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녹용 등 육류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수출국 발행 축산물검역증 필요

사례 5 한국산 멸치 – 통관불허

한국에서 수입한 멸치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FDA에서 통관불허
 – 일정 길이 이상의 멸치는 내장을 제거해야만 수입 가능